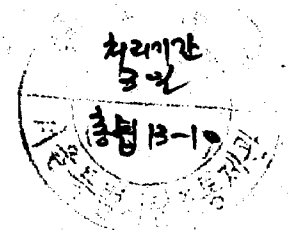


# 서울특별시

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31 / 전화 (02)731-6387 / 전송 731-679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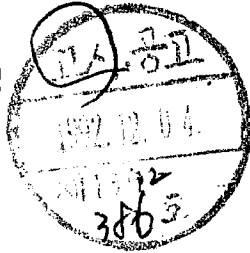
문서번호 주기30411-2109

시행일자 92. 12. 4,

(경유) (제1안)

수신 내부결재

참조



취급		시	장				
보존		영 百					
부	시			장			
주	택			국	장		
주	택	기	획	과	장	전	결
주	택	기	획	과	장	미	첨
기	안	이	창	화	이	장	화

제목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신청한 신내지구2차 (5:6, 15단지) 방화1지구 3차(9단지), 신정차량기지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1항 및 동법시행령 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.

가. 승인내역

(단위: 호)

지 구 별	계	유 형 별			비 고
		공공임대	소형분양	근로복지	
계	6,954	3,583	2,056	1,315	
신내 5,6단지	2,056		2,056		
신내 15단지	1,650	335		1,315	
방화 9단지	250	250			
신정차량기지	2,998	2,998			

첨부 : 1. 사업계획 승인내역 각 1부.

2. 사업계획 신청도서 각 1부. 끝.

(제2안)

수신 :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사장

참조 : 설계감리부장

제목 :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



원본이외는  
4

392-386

1. 귀공사에서 ( )인 신청한 신내지구 2차 (5, 6, 15단지), ( )화1지구 3차 (9단지) 신청차량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 계획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45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니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1. 사업계획 승인내역 각 1부.

2. 사업계획 승인서 각 1부. 끝.

( 제3안 )

수신 : 건설부 장관

참조 : 수신처 참조

제목 :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결과 보고

1.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신내지구 2차 (5, 6, 15단지), 방화1지구3차 (9단지), 신청차량기지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있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45조의 규정에 의거 "별첨"과 같이 승인하였기 보고합니다.

첨부 :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결과 보고서 각 1부. 끝.

수신처 : 주택관리과장, 주택기금과장

## 서울특별시장

( 제4안 )

수신 : 공보관

제목 : 시보게재 의뢰

1.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45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의 5 규정에 의거 고시하고자 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고시(안) 2부. 끝.

## 주택국장

( 제5안 )

수신 : 수신처 참조

제목 :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 통보

1.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신내지구 2차 (5, 6, 15단지), 방화1지구 3차 (9단지), 신청차량기지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 통보하니(하오니) 업무수행에 참고하고(하시고) 필요한 조치를

취하기(취하시기) 바람(바랍니다).

- 첨부 : 1. 사업승인 내역 1부.
- 2. 고시안 1부.      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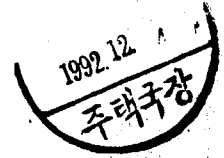
수신처 : 생활체육과장, 사회과장, 가정복지과장, 도시계획과장, 시설계획과장, 도시개발과장, 건축지도과장, 도로계획과장, 도로시설과장, 교통기획과장, 주차기획담당관, 비상계획과장, 상공과장, 연료과장, 가스과장, 공원과장, 환경과장, 조경과장, 하수처리과장, 치수과장, 상수도사업본부장(급수부장), 청소사업본부장(시설계획부장), 지하철건설본부장(총무부장),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(관리과장), 소방서장(강서, 등대문), 한국전기통신공사장, 한국전력공사장, 주택은행장, 구청장(강서, 양천, 중랑)

( 제6안 )

수신 : 총무처장관

참조 : 법무담당관

제목 : 관보게재 의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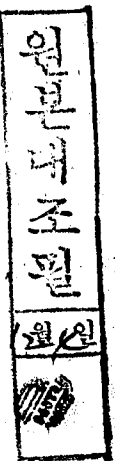


1.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45조의 규정에 의거 신내지구 2차(5, 6, 15단지), 방화1지구 3차(9단지) 신정차량기지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 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거 고시하고자 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고시안 2부.      끝.



서울특별시



#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

1. 사업명 : 주택건설사업[신내지구2차(5.6,15단지), 방화1지구3차(9단지), 신정차량기지]

2. 사업주체 :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 
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가 685-20

3. 사업승인 내역

사업명 (내용)	사업위치	대지면적 (㎡)	건축연면적 (㎡)	사업비 (천원)	건설호수	사업시행 인가
신내지구 2차 5단지	서울시 중랑구 신내 택지개발 사업지구내	57,580	97,894.568	70,893,204	분양 1,230	'92.12 ~ '94.5
신내지구 2차 6단지	서울시 중랑구 신내 택지개발 사업지구내	35,970	69,361.305	47,843,220	분양 826	'92.12 ~ '94.5
신내지구 2차 15단지	서울시 중랑구 신내 택지개발 사업지구내	49,641.0	105,709.26	89,524,566	근로복지 1,315 공공임대 335	'92.12 ~ '94.10
방화1 지구3차 9단지	서울시 강서구 방화 택지개발 사업지구내	8,213.10	14,692.57	12,219,914	공공임대 250	'92.12 ~ '94.10
신정차량 기지	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276번지 일대	76,929.95	176,355.49	118,892,884	공공임대 2,998	'92.12 ~ '95.10

1002.12.1  
주택국장

원본의조필

4. 승인조건 : 별첨

고 시



서울특별시 고시 제1992-386 호

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

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신내지구2차(5,6,15단지), 방화1지구3차(9단지) 및 신정차량기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5조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 32조의 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. (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설계감리부에 비치하여 열람케 합니다)

1992.12.

서울특별시 장

1. 사업명 : 주택건설사업[신내지구2차(5,6,15단지), 방화1지구3차(9단지), 신정차량기지
2. 사업주체 :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 
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가 685-20
3. 사업승인 내역



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

사업명 (내용)	사업위치	대지면적 (㎡)	건축연면적 (㎡)	사업비 (천원)	건설호수	사업시행 인가
신내지구 2차 5단지	서울시 중랑구 신내 택지개발 사업지구내	57,580	97,894.568	70,893,204	분양 1,230	'92.12 ~ '94.5
신내지구 2차 6단지	서울시 중랑구 신내 택지개발 사업지구내	35,970	69,361.305	47,843,220	분양 826	'92.12 ~ '94.5
신내지구 2차 15단지	서울시 중랑구 신내 택지개발 사업지구내	49,641.0	105,709.26	89,524,566	근로복지 1,315 공공임대 335	'92.12 ~ , '94.10
방화1 지구 3차 9단지	서울시 강서구 방화 택지개발 사업지구내	8,213.10	14,692.57	12,219,914	공공임대 250	'92.12 ~ '94.10
신정차량 기지	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276번지 일대	76,929.95	176,355.49	118,892,884	공공임대 2,998	'92.12 ~ '95.10

# 사업계획승인조건

## <공통사항>

1. 보도포장은 투수성아스팔트 콘크리트나 아스팔트콘크리트 중에서 선정시공할것

2. 가로등 설치

○ 설치기준

· 기준조도 - 20LX 이상

· 등 고 - 편 측 :  $H \geq 1.2 \times$  차도폭

지그재그 :  $H \geq 0.8 \times$  차도폭

마주보기 :  $H \geq 0.6 \times$  차도폭

· 경 간 -  $S \leq 3.5 \times$  등고

· 전원공급 - 2회로방식

· 전기요금 - 종량제

· 점소등방식 - 무선원격조정

○ 인수인계 - 시설물의 인수인계는 입주시기를 기준 인수인계

○ 전력수용신청 - 시설자명의로 신청하고 인수인계후 관할구청장 명의로 변경

○ 등주의모형은 9m이하는 원형, 10m이상은 팔각데파로하고 등기구는 세종로 대형으로 사용

○ 추후 실시설계도서는 관계과(도로시설과)의 재검토받아 시행

3. 주차시설

○ 주차장계획은 차량증가추세에 대비 장래주차수요 증가시 추가 지하주차장 시설확충이 가능토록 계획할것

○ 지하주차장의 조명은 70LX이상 조도를 유지하고 100대를초과하는 경우 주차장내부 전체를 볼수 있도록 CCTV 및 녹화장치를 포함한방법 시설을 설치할것

○ 지하주차장의 높이는 2.3M이상, 진출입경사로의 종단구배는 직선부에서 17% 곡선부에서 14%를 초과할수없음

○ 주차대수의 1% 이상을 지체장애인 전용으로 확보

원본대조필

주택국장

4. 판매시설의 시장개설은 관할구청장과 협의처리
5. 도시가스 시설은 착공시 관할도시가스 회사와 협의처리
6. 어린이 놀이터 주변에 적정량의 공원등을 설치할것
7. 환경영향평가 결과 및 환경처 협의내용을 준수
8. 사업시행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 규제법상 의무이행
9. 하수시설

- 단지내는 우, 오수 분류식으로하여 연결시키데 최초관경은 D=450M/M, 오수관D=300M/M이상으로하고 하수분관에 연결되는 부분은 유지관리용 맨홀설치
- 준공시 하수관내 T.V카메라로 촬영하여 관리청에 인계시 비디오 테이프를제출
- 오수관 맨홀뚜껑은 밀폐식으로하고 맨홀내에는 인버트를 설치하여 퇴적물이 생기지 않도록하고 하수관은 소켓고무링 홈관또는 PC관을 사용하여 수밀성이되게 할것이며 제품은 KS품으로 할것
- 맨홀구체와 관접합부에 수팽창 고무수지판을 사용하여 지하수유입을 방지할것이며 하수관은 오점 및 누수등이 발생되지 않도록국할것

10. 일반폐기물 보관시설

- 각동별로 일반쓰레기 보관시설 1개, 재활용품 5종보관용기(종이류, 고철류, 유리병류, 캔류, 플라스틱류)1조를 설치하되 설치규격 및 방법등은 관할구청장과 사전협의후 설치할것
- 지하실 또는 별도의 장소에 30㎡이상규모의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

11. 소방시설은 반드시 국가검정품으로 시공하고 기술수준에 관한사항은 소방시설시공 신고시 세부계획도서를 관할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을것이며 준공동의를 받은후 사용토록할것

12. 급수장치

- 규정된용량의 저수조와 흡수정이하의 장치(자체가압시설 포함)를 단지내에 시설하고 지하저수조 이전인입관로상에 개폐시간 자동조절용 전동밸브를 설치하여 야간에만 저수하여 상시급수가 가능토록 할것

- 단전단수에 대비 비상발전기 등 전력공급설비, 자체동력을 겸비한 양수 펌프 및 비상급수 대책을 수립할것
- 급수에 따른 수도미터실 및 단지내 배관등 급수시설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할수도사업소장과 사전협의할것

13.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시 부여한 조건을 이행할것

택지개발계획과 상이한건설계획(면적, 호수, 층수, 용적율등) 은 개발계획 변경시 조정할것

14. 수도권정비심의 위원회 의결사항, 인구영향평가심의사항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부여한조건을 이행할것

15. 공사로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할것이며 공사장별 세분, 세차시설을 설치하여 공사로인한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할것

16.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및 규칙에의한 제반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할것

원로대조될  
원인

<신정차량기지>

1. 아파트입주에 맞추어 개교가 가능토록 학교용지에 대한 대지조성사업을 병행 시행할것
2. 주민운동시설의 안정성 확보를위해 옹벽높이를 1.2M 이상확보할것
3. 지하주차장 입, 출입램프의 위치가 교통영향평가지 제시한<sup>12</sup>중합 개선안과 상이하므로 위치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는 관계과와 협의후 조정할것
4. 인근도로 및 철도로부터의 소음방지대책을 강구할것
5. 건물전면에 배식된 교목은 채광을고려하여 다른수종으로 교체하고 휴게소 및 운동장 주변에는 교목식재 검토하고 한밭에 대비한 급수시설검토
6. 안양천 하수처리장의 2차처리시설 완공(94.12예정)이후 준공되는경우 오수 관로번호 58-신정제2유수지 까지의 합류식 지역을 분류식으로 하여 안양천 차집관거에 연결시공할수 있도록 관할구청과 협의시행하고 단지내 분뇨처리 시설은 삭제할것
7. 진입교량 A.B.C의접속부와 부지계획과의 차이조정 및 단지내 도로의 계획 고가 조정될경우 오, 우수관의 종단계획의 조정검토



8. 대지조성(기초, 구조, 형태, 하중등)에 변동이 있을경우 지하철공사와 직접 협의 처리할것

<방화 9단지>

- 1. 도로개설요구와 관련한 민원회신(도개공 개계710-10,92.1.22) 사항을 검토반영후 사업시행할것
- 2. 홍수시 침투유출량을 최소화시킬수 있도록 저류조시설 검토
- 3. 단지내 급수계획은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후시행할것
- 4. 대지조성공사(옹벽 및 토공)에 대하여는 관할구청과 협의시행할것

<신 내5,6,15단지>

- 1. 어린이집(탁아소)에 조리실 설치검토(5,6단지)
- 2. 신내5,6단지는 용적을 및 층고등을 상향조정코자 관련부서와 재협의중으로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이 수반되어야할 사안으로 사업착수전 택지개발 부서와 협의후 시행할것(조성시 사업계획변경)
- 3. 교통영향평가지 심의의결된 지구별 개선안 시행계획중 미반영된 내용을 반영 할것
- 4. 도개30260-39(92.1.8)및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내용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시설이전 및 아파트 층고문제등은 공사에서 직접 육군제1596 부대와 협의각서 체결후 사업시행할것
- 5. 지역난방 계획에 의한 지구내 열공급 계획은 사안에 따라 중앙난방 열공급 체계로 변경될수 있으니 중앙난방 방식에의한 열공급체계도 별도 검토할것
- 6. 지하주차장 입,출구 주변에 배식된수종은 생울타리용 수종(개나리, 쥐똥나무)으로 변경검토할것
- 7. 수급수30340-638(92.5.28)에의한 조건부여 사항을 이행할것
- 8. 비상용수를 공급할수있는 지하수개발을 검토할것(권장사항)
- 9. 기존도로가 협소하므로 공사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인근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지구진입 외곽도로를 개설 이용토록할것

인공목재  
인공목재  
인공목재

1999.12  
주래국장